제93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사항별 정비인력 산출기준 준수 의무 신설(신설) ㅇ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사항별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을 구체화 – 항공기 도입 전 1년간 정비 업무량(=소요인력) 산출 시 반영할 요소 11종과 각 요소별 세부 계산식 등 산출기준 마련 –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계획정비 업무 중 중간점검(TR) 및 비행전후점검(PR/PO 또는 LSC)의 기종별 최소 소요 맨아워 설정, 계획정비인력 산출시 활용하고 각 점검시마다 최소소요 맨아워를 확보 ▶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5조~제16조 2.정비인력 산출근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신설(신설) ㅇ 항공운송사업자는 적정인력 산출에 필요한 기록*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국토부장관 등에게 매년 1회 이상 확인받아야 함 – 정비사 작업이력, 실제 투입 맨아워 등에 대한 별도의 정비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항공사는 확인점검 주기 연장 가능 ▶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7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통신시설 등급 지정 (신설) ○ 주요통신사업자에 포섭되는 데이터센터사업자가 설치·운용·관리하는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기준 마련 – 통신시설의 ▲전산실 바닥면적이 22,500㎡ 이상 또는 ▲수전(受電) 설비용량이 40MW 이상이면 A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조치 이행 ▶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	1.비중요
3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배아 및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제도(신설) ○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 기준 명시 – 발병 나이, 사망 시기, 질병의 중증도, 치료 가능성, 삶의 질 등 ○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함 –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1. 유전질환의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, 2.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함 ▶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예방규정 작성 및 평가 대상 등(강화) ㅇ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을 규정 –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*의 3,000배 이상인 제조소 · 저장소 · 취급소 * 위험물질 별로 일정한 양에 도달했을 때,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기준값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	1.중요
5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소방청)	1.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방법 등(신설) ㅇ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작성한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 – 예방검검 이행실태 평가는 최초평가를 예방규정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, 정기평가를 직전 평가한 날부터 4년 이내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 –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공정안전보고서, 「위험물질관리법」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점검 · 평가항목과 중복될 경우, 평가를 면제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검역법 시행령 개정안 (질병관리청)	1.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(신설) ○ 「검역법」내 시스템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, 연계를 통하여 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함 -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관련 사항 -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련 사항 - 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 관련 사항 - 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관련 사항 -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▶검역법 시행령 제5조	1.비중요
7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안전모 지급 및 확인 의무 강화(강화) ○ 자전거를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 ○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착용 지시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, 제672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분쇄기 등의 방호조치 강화(강화) ㅇ 작동 중 덮개 등이 개방되는 경우 가동을 정지하거나, 자동정지되는 연동장치를 설치 또는 위험감지시 정지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3.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등 방호조치 강화(강화) ㅇ 볼 리프트 사용 중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, – ❶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, ❷센서 등 감응형(感應形) 방호장치, ❸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함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4.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(강화) ㅇ 구내운반차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(소방청)	1.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(신설) ㅇ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구조, 기능시험, 표시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 ▶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	1.비중요
9	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(소방청)	1.소방용 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(신설) ㅇ 소방용 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▶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	1.중요
10	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(소방청)	1.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(신설) ㅇ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▶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	1.비중요